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기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작 제3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지난 5월 27일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해 직접 참석하여 설명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법령으로 허용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제24조의2제1항제1호~3호)에만 예외적으로 수집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조례의 별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 조례의 별지 ‘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서’(제1호),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통보서’(제2호)에는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반면,

세종 등 11개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사용하고 있고 서울시 또한 실무적으로 생년월일로 대체하여도 업무상 문제가 없을 것이므로 해당 의원의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 위원 여러분!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